

#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 ①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② 적용 대상

- (대상) 중점관리시설 등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홀덤펍, 실내체육시설(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파티룸

- (홀덤펍)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곳
  - \*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되어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과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곳 모두 포함
-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실외 타석과 실내 대기석을 융합한 형태의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 (파티룸) 각종 파티(생일파티, 동아리·동호회 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를 개최할 목적의 개인들에게 시간을\* 정하여 공간을 임대하는 시설로서, 공간임대업 또는 자유업 등으로 등록된 시설
  - \* '데이패키지', '올나잇패키지' 등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홀덤펍·파티룸·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에 대한 조치 완화는 불가,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③ 적용 기간

- 2021년 1월 4일(월) 0시 ~ 2021년 1월 17일(일) 24시

## ④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제80조제7호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 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 5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③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

###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 여부 현장점검 →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자체별로 **홀덤펍·파티룸·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에 대한 조치 완화는 불가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수도권 학원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①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② 적용 대상

- 학원(독서실 제외) 집합금지
  - 다만, 아래와 같은 3가지 경우에만 운영 허용하며, 방역지침 의무화

- ① 동 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숙박시설 운영 금지)
- ②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 ③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은 허용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완화된 조치는 불가,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제35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은 노래·관악기 교습을 금지하는 방역지침 의무화

## ③ 적용 기간

- 2021년 1월 4일(월) 0시 ~ 2021년 1월 17일(일) 24시

## ④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제2의2호,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5 추진내용 및 절차 : 학원 · 교습소

① (중대본) **일반관리시설 중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③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예방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

\* 원격 수업 등 비대면 서비스는 가능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완화된 조치는 불가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6 추진내용 및 절차 : 집합금지 대상이 아닌 교습 과정, 평생교육기관

① (중대본) 일반관리시설 중 학원·교습소·평생교육기관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방법 제83조)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감염병예방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감염병예방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참고)**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완화된 조치는 불가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참고

## 학원 등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 □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포함)

- 아래와 같은 3가지 경우에만 운영 허용하며,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아래 표와 같은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 ① 동 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숙박시설 운영 금지)
- ②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 ③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자 명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사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li> <li>*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li> <li>**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li> </ul> </li>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 <li>▶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li> <li>▶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li> <li>▶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li> </ul> </li> <li>▶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li> <li>▶ 시설허가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사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ul> </li> <li>▶ 마스크 착용</li> <li>▶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li> </ul> </li> </ul>

### □ 평생교육기관(문화센터 등)

관리자·운영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악기·노래 교습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을 모두 포함,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및 학력인정(학점은행제 등 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시설은 제외</li> </ul> </li> </ul>

#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1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2 적용 대상

- (대상)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 식당·카페 분류기준 >

구분	대 상
카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랜차이즈형 카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li> </ul> </li> <li>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 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li> <li>■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li> <li>■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li> </ul> </li> <li>■ 무인카페(자동판매업 등)</li> </ul>
식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li> <li>-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료*를 판매하나,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li> <li>*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li> </ul> </li> <li>■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li> </ul> </li> </ul>

## 3 적용 기간

- 2021년 1월 4일(월) 0시 ~ 2021년 1월 17일(일) 24시



#### 4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 2호의2,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 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5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카페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지침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 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참고1)**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 또는 완화된 조치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참고1

## 식당·카페 분류기준 및 의무화 방역지침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구분	대 상	수칙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p>공통 적용 방역수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식당·카페</b>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li> <li>-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li> <li>-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li> <li>*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li> <li>-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li> <li>■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li> <li>■ 방역관리자 지정</li>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 <li>■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li> <li>■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li>-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li> <li>■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li> <li>■ 마스크 착용</li> </ul>

구분	대 상	수칙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카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랜차이즈형 카페*</li> <li>*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 margin: 5px 0;"> <p>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p> <p>② 직영점 형태 포함</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li> <li>■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li> <li>*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li> <li>■ 무인카페(자동판매업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li> <li>▶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li> </ul> <p>&lt;무인카페의 경우 아래 수칙 적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li>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li> <li>▶ 일 2회 이상 시설 소독(대장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li> <li>▶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li> </ul> <p>&lt;무인카페의 경우 아래 수칙 적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li> <li>▶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li> <li>▶ 마스크 착용</li> </ul>
식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li> <li>-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li> <li>-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응 음식류*를 판매하나,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li> <li>*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li> <li>■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li> <li>▶ 21시부터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li> <li>▶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면적 50㎡이상)</li> </ul> <p>&lt;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 적용 방역수칙 의무화</li> </ul> <p>&lt;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li> </ul>

구분	대 상	수칙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li> </ul> <p>&lt;브런치카페·패스트푸드점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판매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li> <li>- 다만 가급적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li> <li>▶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li> </ul> <p>&lt;브런치카페·패스트푸드점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섭취하는 경우에 한해 매장 내 취식 가능</li> <li>- 다만 가급적 1시간 이내 섭취 권고</li> <li>▶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가능</li> </ul>

## 참고2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영업 관련 FAQ

### Q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함(식당, 시설 면적 50m<sup>2</sup> 이상인 경우)
- 여기에서 '테이블'이란 앉을 수 있는 인원 수나 모양 등과는 관계 없이 분리하여 이동 가능한 탁자를 의미하며, 테이블 및 이용인원 배치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람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 가림막)	

**Q2. 테이블에 설치하는 칸막이/가림막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 칸막이·가림막은 높이가 70cm 이상, 길이가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
- 또한, 의무사항은 아니나 테이블 가운데 칸막이·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 감염 차단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므로 가능한 경우 설치 권장

**Q3. 한 매장 내에서 일부 공간은 테이블 간 1m를 띄우고, 일부 공간은 좌석/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거나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인정되나요?**

- 그러한 경우에도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인정됨
- 예를 들어, 룸(room)과 홀(hall)이 같이 있는 음식점의 경우 룸에서는 테이블 간 1m 간격을 유지하고, 홀에서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앉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조합하여 거리두기 수칙을 지킬 수 있음

**Q4. 식당·카페에서도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는 건가요?**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에도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이 의무화됨

#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1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2 적용 대상

- (대상) 일반관리시설 14종

### < 일반관리시설 14종 >

▲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목욕장업 ▲ 공연장 ▲ 영화관  
▲ PC방 ▲ 오락실·멀티방 ▲ 독서실·스터디카페 ▲ 직업훈련기관 ▲ 놀이공원·워터파크  
▲ 이·미용업 ▲ 백화점·대형마트  
▲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300㎡ 이상)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실외 겨울스포츠시설·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완화된 조치는 불가,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3 적용 기간

- 2021년 1월 4일(월) 0시 ~ 2021년 1월 17일(일) 24시

## 4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 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일반관리시설 14종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 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참고)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 지자체별로 실외 겨울스포츠시설·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완화된 조치는 불가,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참고

## 일반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조치 완화 불가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자 명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li> <li>*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li> <li>**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li> </ul> </li>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 <li>▶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li> <li>▶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li> <li>▶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li> <li>▶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 장비대여, 탈의실 외에 시설 내부의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노래방·당구장 등) 집합금지</li> <li>▶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li> <li>▶ 타 지역-시설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li> <li>▶ (권고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li> <li>②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li> <li>③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이 사용하는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li> </o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li>▶ 마스크 착용</li> <li>▶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li> </ul>

## □ 결혼식장, 장례식장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자 명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li> <li>*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li> <li>**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li> </ul> </li>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 <li>▶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li> <li>▶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li> <li>▶ 개별 결혼식·장례식 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li>▶ 마스크 착용</li> </ul>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 결혼식장 및 결혼식장 뷔페 관련 추가 안내

○ 개별 결혼식당 참석자 50인 미만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결혼식에 초대받아 예식홀 또는 뷔페를 이용하는 모든 하객의 수가 50인 미만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인원 산정 시 주최 측(신랑·신부)은 포함, 결혼식장 진행요원은 제외

- 여성가족부에서 9월 10일에 안내한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에 따르면, 결혼식을 할 때는 완전히 분리된 공간 내에 50인 미만의 인원(총인원 기준)이 머물러야 하며, 다른 공간에 머무르는 인원과의 이동 또는 접촉이 없어야 합니다. 예식홀에서 식에 참석한 사람이 뷔페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하나의 결혼식당 예식홀 또는 뷔페를 이용하는 하객의 수를 모두 합쳐 50인 미만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 다만,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각 공간에서 참석하는 인원들 간에 동선이 겹치지 않는 등 접촉이 아예 없는 경우 49인씩으로 나누어 개최가 가능합니다.

## □ 목욕장업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자 명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li> <li>*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li> <li>**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li> </ul> </li>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 <li>▶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li> <li>▶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li> <li>▶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16㎡당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li> </ul> </li> <li>▶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li> <li>▶ 사우나·한증막·찜질 시설 운영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li>▶ 마스크 착용</li> <li>▶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li> </ul>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 영화관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자 명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li> <li>*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li> <li>**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li> </ul> </li>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 <li>▶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li> <li>▶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li> <li>▶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 관리</li> </ul> </li> <li>▶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li> <li>▶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li>▶ 마스크 착용</li> <li>▶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li> </ul>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 공연장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자 명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li> <li>**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li> </ul> </li> </ul> </li>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 <li>▶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li> <li>▶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li> <li>▶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관리</li> </ul> </li> <li>▶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li>▶ 마스크 착용</li> <li>▶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li> </ul>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 PC방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자 명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li> <li>**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li> </ul> </li> </ul> </li>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 <li>▶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li> <li>▶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li> <li>▶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li> </ul> </li> <li>▶ 시설 내 음식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li>▶ 마스크 착용</li> <li>▶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ul>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 오락실·멀티방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자 명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li> <li>*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li> <li>**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li> </ul> </li>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 <li>▶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li> <li>▶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li> <li>▶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li> </ul> </li> <li>▶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li> <li>▶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li>▶ 마스크 착용</li> <li>▶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li> </ul>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 독서실·스터디카페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자 명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li> <li>*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li> <li>**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li> </ul> </li>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 <li>▶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li> <li>▶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li> <li>▶ 시설 내 음식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li> </ul> </li> <li>▶ 단체룸은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li> </ul> </li> <li>▶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li>▶ 마스크 착용</li> <li>▶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ul>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 직업훈련기관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자 명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li> <li>*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li> <li>**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li> </ul> </li>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 <li>▶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li> <li>▶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li> <li>▶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li> </ul> </li> <li>▶ ①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②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고,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안 ②안 중 선택</li> <li>**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ul> </li> <li>▶ 마스크 착용</li> <li>▶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li> </ul> </li> </ul>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 놀이공원·워터파크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자 명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li> <li>**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li> </ul> </li> </ul> </li>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 <li>▶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li> <li>▶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li> <li>▶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li> <li>▶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li>▶ 마스크 착용</li> </ul>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 이·미용업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자 명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li> <li>**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li> </ul> </li> </ul> </li>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 <li>▶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li> <li>▶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li> <li>▶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li> </ul> </li> <li>▶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li>▶ 마스크 착용</li> </ul>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백화점·대형마트 ※ 조치 완화 불가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 <li>▶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li> <li>▶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li> <li>▶ 이용자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li> <li>▶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li> <li>▶ 집객행사 금지</li> <li>▶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 및 조치</li> <li>▶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스크 착용</li> <li>▶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협조</li> <li>▶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li> <li>▶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li> </ul>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백화점·대형마트 이외의 상점·마트(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m<sup>2</sup> 이상)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 <li>▶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li> <li>▶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li> <li>▶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 시식코너 운영 중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스크 착용</li> <li>▶ 시식코너 이용 금지</li> </ul>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수도권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①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② 적용 대상

- (대상) 아래 법률에 따른 숙박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모텔, 여관 등)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등)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③ 적용 기간

- 2021년 1월 4일(월) 0시 ~ 2021년 1월 17일(일) 24시

## ④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 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숙박시설 등에 의무화된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

○ **적용 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li> </ul> </li> <li>▶ 전체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li> <li>▶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li> </ul> </li> <li>▶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참여 금지</li> <li>▶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li> </ul>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완화된 조치는 불가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①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② 적용 대상

- (대상) 종교시설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③ 적용 기간

- 2021년 1월 4일(월) 0시 ~ 2021년 1월 17일(일) 24시

## ④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 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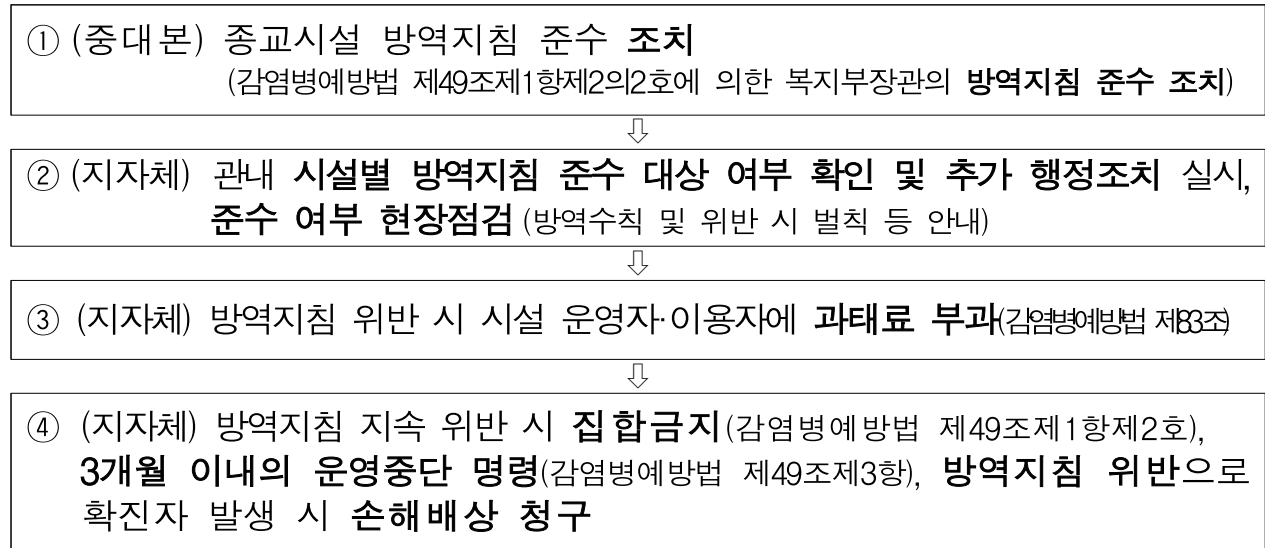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추진내용 및 절차**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 금지 또는 운영중단 명령도 가능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참고1)**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완화된 조치는 불가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참고1

# 종교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b>비대면 실시</b></li> <li>* <b>비대면</b>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b>전체 20명 이내</b>”로 운영</li> <li>■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숙박행사도 금지)</li> <li>*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li> <li>■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출입자 명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li> </ul> </li> <li>■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li>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 <li>■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li> <li>■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li> <li>■ 방역관리자 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b>비대면 실시</b></li> <li>* <b>비대면</b>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b>전체 20명 이내</b>”로 운영</li> <li>■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숙박행사도 금지)</li> <li>*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li> <li>■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li>■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li> <li>■ 마스크 착용</li> <li>■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li> </ul>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참고 2

## 종교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FAQ

###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 예배(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Q3. 거리두기 2.5단계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로 운영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성가대 운영 금지\*
  - \*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 <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좌석기준	좌석 한칸 띄우기	좌석 수의 30% 이내	좌석 수의 20% 이내	<u>비대면, 20명 이내</u>	비대면 1인 영상*
좌석 외 기준	수용인원의 50% 이내	수용인원의 30% 이내	수용인원의 20% 이내		

\*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한 필요인력, 종교예식 등 모든 인력을 포함하여 “종교시설 전체 15명 이내(일반신도 참여금지)”로 최소화

**Q4. 종교시설 주관으로 타 시설(수련원, 기도원, 숙박시설 등)에서 정규 종교활동을 개최할 경우에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타 시설에서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종교시설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정규 종교활동의 경우에도 종교활동 2.5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함

**Q5.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동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2.5단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 50명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로 49명 이내로 운영

**Q6.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1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2 적용 대상

- (대상)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3 적용 기간

- 2021년 1월 4일(월) 0시 ~ 2021년 1월 17일(일) 24시

## 4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 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 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참고)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 또는 완화된 조치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참고

# 고위험사업장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 □ 콜센터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 <li>▶ 1일 1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li> <li>▶ 방역관리자 지정</li> <li>▶ 사업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li> <li>▶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또는 칸막이 설치</li> </ul> <p>* 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li> <li>▶ 마스크 착용</li> </ul>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 유통물류센터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 <li>▶ 1일 1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li> <li>▶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li> <li>▶ 하역·운반 장비, 공용물품(작업복·작업화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대장 작성)</li> <li>▶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li> </ul> <p>* 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li> <li>▶ 마스크 착용</li> </ul>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1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2 적용 대상

- (대상)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3 적용 기간

- 2021년 1월 4일(월) 0시 ~ 2021년 1월 17일(일) 24시

## 4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 2의3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3.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5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운송 수단 이용자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3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② (지자체) 관내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운송수단 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 운송 수단 이용자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

#### 이용자 수칙

- ▶ 마스크 착용
-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항공편 제외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관내 운송수단에 대해 **추가 행정조치** 실시
  -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 또는 완화된 조치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운송 수단 이용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42(2021.1.2.)에 따른 수도권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는 본 조치로 대체함

## 1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2 적용 대상

-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운영 허용하며, 방역지침 의무화

① 체육시설법상 체육도장업에서 아동·학생(고등학교 3학년생까지)에 대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까지 교습을 실시하는 경우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3 적용 기간

- 2021년 1월 4일(월) 0시 ~ 2021년 1월 17일(일) 24시

## 4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 2호, 제2의2호,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5 추진내용 및 절차 : 실내체육시설

- ① (중대본)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

###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완화된 조치를 실시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6 추진내용 및 절차 : 집합금지 대상이 아닌 실내체육시설

① (중대본)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

###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참고)**

###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완화된 조치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참고

# 운영 가능한 실내체육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 ○ 실내체육시설 중 아래와 같은 경우

- ① 체육시설법상 체육도장업에서 아동·학생(고등학교 3학년생까지)에 대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동시간대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인원) 9인까지 교습을 실시하는 경우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자 명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li> <li>*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li> <li>**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근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li> </ul> </li>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 <li>▶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li> <li>▶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li> <li>▶ 이용인원 제한 (동시간대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인원 9인까지 허용)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li> <li>▶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li> <li>▶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li>▶ 마스크 착용</li> <li>▶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li> </ul>

#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①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② 적용 대상

### ①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 적용 예외

####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 제외,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모임·행사 인원 제한 조치(수도권 50명 미만) 적용

**② 사적 모임을 제외한, 5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이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써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 ▲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③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능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③ 적용 기간**

- 2021년 1월 4일(월) 0시 ~ 2021년 1월 17일(일) 24시

**④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2의4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5 추진내용 및 절차 : 사적 모임

① (중대본) 사적 모임 참석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



② (지자체) 관내 사적 모임 참석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과태료 등 안내)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참석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또는 해당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④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바로 집합금지 조치도 가능

### ○ 적용대상(사적 모임 참석자)의 준수사항

#### < 사적 모임 >

##### 참석자 수칙

-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 여부 현장점검 → 위반 시 집합금지 행정 조치 → 벌칙 부과 등 조치

① 관내 사적 모임 참석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완화된 조치는 불가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② 해당 모임·행사에 대해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③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또는 해당 사적모임에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6 추진내용 및 절차 :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① (중대본)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장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 확인 추가 행정조치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주최자·종사자·참석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④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바로 집합금지 조치도 가능

### ○ 적용대상 집합·모임·행사의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50인 미만의 집합·모임·행사,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장소·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

#### < 집합·모임·행사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자 명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li> <li>*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li> <li>**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li> </ul> </li>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li> <li>▶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li> <li>▶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li> </ul> </li> <li>▶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li>▶ 마스크 착용</li> </ul>

※ '이용자'라 함은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참석자 등 모임·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자 명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li> <li>*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li> <li>**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관련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li> </ul> </li>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li> <li>▶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li> <li>▶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li> </ul> </li> <li>▶ 시설 허가·신고면적 16㎡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li>▶ 마스크 착용</li> </ul>

※ ‘이용자’라 함은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참석자 등 모임·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집합금지 행정 조치 → 벌칙 부과 등 조치

① 관내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완화 또는 강화된 조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② 해당 모임·행사에 대해 불가피한 개최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③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1 공통사항

## Q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Q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② 결혼식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③ 행사, 각종 시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수도권 16㎡당 1명, 비수도권 4㎡당 1명), 모임·행사 인원 제한(수도권 49명까지,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 미적용

## ④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Q3.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 Q4.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됨
- \* (예)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

#### Q5.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 Q6.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2 가족 모임 관련

#### Q7.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과 가족(친정과 시댁, 형제자매 가족과의 모임 등)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 한하여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함

**Q8.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Q9.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되나,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Q10.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나요?**

-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함

**Q11. 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되나요? (결혼식장에서의 결혼, 예식장이 아닌 장소에서 스몰웨딩을 하는 경우)**

- 결혼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Q12. 장례식의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장례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3 직장 관련**

**Q13.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4.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도 되는 건가요?**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15.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지?**

-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16. 식당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됨

**Q17.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음

**Q18.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9.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
  -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20. 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21.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5** 기타

**Q22.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요?**

-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

**Q23. 조기축구, 등산, 골프, 낚시 등 실외 운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조기축구, 등산, 골프 등 친목 목적의 실외 운동 시 4명까지 가능  
- 단,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

**Q24.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할 경우, 해당 교사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서의 5명에 포함되나요?**

- 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의 경우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모임 인원 산정시 제외

**Q25. 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됨

**Q26.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

**Q27.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